# 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총포·도검·

## 화약류등단속법위반

[수원지방법원 2014. 10. 24. 2014고단2984]



#### 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홍현준(기소), 김성현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임호섭(국선)

### 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.

#### 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